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909호 2012. 11. 6(화)

## ◀ 입법예고 ▶

-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제2012-1607호) ..... 2

## ◀ 고 시 ▶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제2012-105호) ..... 8
- 포항도시계획시설(대송면 제내리 소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12-106호) ..... 9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12-107호) ..... 11

## ◀ 공 고 ▶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2012-1604호) ..... 15
- 포항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제2012-58호) ..... 20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제2012-1619호) ..... 22
- 제1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제24호) ..... 24

회 람									
--------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607호

## 공 고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구룡포 근대역사관에 필요한 업무와 기능, 시설물 이용 및 관람 등에 관한 내용의 전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관람객에 대한 이용 편의와 각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구룡포 근대역사관의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구룡포읍 구룡포길 153-1
- 근대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대역사관 명예관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근대역사관의 개관,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부터 제10조까지)
- 근대역사관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3. 관련법령**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11월 1일 ~ 11월 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2272, FAX 054-270-2270)

email : jksm87@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구룡포 근대역사관(이하 “근대역사관”이라 한다)은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53-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근대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근대시기의 역사, 가옥, 문화 등의 자료 수집·전시와 홍보 관람 업무
- 2. 근대역사관 소장품의 보관·진열, 자료의 고증, 묘사 및 복원 등 시설 및 유물의 보호관리
- 3.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여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 활용
- 4. 그 밖에 근대역사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 ① 근대역사관 관장은 근대역사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역사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 역사관(전시관 또는 박물관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3. 향토사학자 또는 근대 역사 및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등
-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명예관장은 시장의 명예 의하여 문화자료 발굴 및 고증, 유물전시 안내, 풍속 연구 등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근대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1월 2일, 설날 및 추석 당일
- 2. 매주 월요일

3. 시설의 개·보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관공서, 학교, 그 밖에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도 개관 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근대역사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근대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지역의 근대문화 연구자료 활용 및 역사적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근대역사관 운영의 탄력성과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유물의 보호관리, 고증, 시설유지, 그 밖에 근대문화 풍속 연구 등 필요한 경우에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 2.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근대역사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주·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근대역사관에서 관람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관람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운영 및 관리)** ① 근대역사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은 근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및 개인에게 공개경쟁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1. 근대 문화자료 연구 및 보존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영리 법인, 단체
- 2. 그 밖에 역사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성과평가 결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대역사관을 위탁 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기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근대역사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실비변상 등)** 명예관장이 제4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근대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105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5-1번지 외 3필지 (지방하천 냉천)내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목적의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 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항시장 박승호

□ 하천점용(공작물의 신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 목적	점용면적 (㎡)		점용기간		점용자	비고
	읍면동	지번		일시	영구	일시	영구		
냉천 (지방 하천)	오천읍 문덕리	115-1번지 외 3필지	가스배 관매설	495	50	2012.11. 2 ~ 2012. 12. 20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최대림	



포항시 고시 제2012-106호

## 포항도시계획시설(대송면 제내리 소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대송면 제내리 소로2-1호선)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92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포항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류 1호선)사업
  - 명 칭 : 대송면 제내리 도시계획도로(소2-1)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35㎡
  - 규 모 : L=11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포항시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 고시일
  - 준 공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대송 제내	221-6	대	14	14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347-1 한영골든빌라 가-301	장용덕	포항시 남구 용덕리 261-7 오천농업협동 조합	근저 당권	
2	대송 제내	159-11	대	1	1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307	김이조			
3	대송 제내	159-13	도	20	20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307	김이조			
계				35	35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 격	단위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리,동	지번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대송 제내	923	상가	경량철골/ 합석	㎡	154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347-1 한영골든빌라 가-301	장용덕	오천 농업 협동 조합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61-7	근저 당권	
			주택	조립식판넬	㎡	24						
			담장	블록	㎡	3,24						
			대문	철재	식	1						
			영업권	신일마트	식	1						
			영업권	담배	식	1						
			영업권	신일식육점	식	1						
광고판	콘크리트	식	1									

※ 관계도서 등은 포항시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로과(☎054-270-34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2-107호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운동장】시행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위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46
2. 사업의 종류·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사업
  - 명칭 :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3. 사업 면적·규모
  - 대지면적 : 29,388m<sup>2</sup>
  - 건축면적 : 7,206m<sup>2</sup> (지상1층)
  - 건 폐 율 : 3.057% , 용적률 : 3.0576%
4. 사업 시행자
  - 성 명 : 포항시장(506-83-00025)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5. 사업예정일 : 실시계획 협의일 ~ 2013.02.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내용 : 【붙임조서】 참조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체육지원과 김일동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270-2804)

2012년 11월 5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지분)
						성명	주소	
계	69필지			67,134	29,388			
1	포항시 대도동	316-29	도	718	141	국(농림수산부)		
2	포항시 대도동	316-31	구	978	385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포항시 대도동	325-2	체	11,982	3,782	포항시		
4	포항시 대도동	328-13	구	79	79	국(농림수산부)		
5	포항시 대도동	328-21	전	3,210	895	포항시		
6	포항시 대도동	328-38	체	63	28	국(건설교통부)		
7	포항시 대도동	328-39	전	2,827	1,166	포항시		
8	포항시 대도동	328-40	전	1,954	1,793	포항시		
9	포항시 대도동	328-41	전	1,468	1,468	포항시		
10	포항시 대도동	328-42	대	73	73	포항시		
11	포항시 대도동	328-44	전	1,914	1,798	포항시		5,147 /5,790
						이을출	영일군 기계면 탑정동 103	643 /5,790
12	포항시 대도동	328-46	전	1,081	1,081	포항시		
13	포항시 대도동	328-49	도	79	78	국(건설교통부)		
14	포항시 대도동	328-50	전	76	70	포항시		
15	포항시 대도동	328-62	전	33	1	포항시		
16	포항시 대도동	328-65	도	162	162	국(건설교통부)		
17	포항시 대도동	328-67	전	1,802	1,802	포항시		24,360 /27,030
						이영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73-13 화성빌라 101호	534 /27,030
						김애영		356 /27,030
						김애화		356 /27,030
						김애정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660-2 세영더-조은아파트 105-301

연 번	행정구역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 명	주 소	
계	69필지			67,134	29,388			
17	포항시 대도동	328-67	전	1,802	1,802	김 평	포항시 남구 대잠동 928-23	356 /27,030
						김일천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67	356 /27,030
						김애연	경상남도 군 대의면 리 389-2	의령 중촌 356 /27,030
18	포항시 대도동	328-68	전	1,954	1,954	포항시		
19	포항시 대도동	328-69	전	975	975	포항시		
20	포항시 대도동	328-71	전	1,226	1,226	포항시		
21	포항시 대도동	328-72	전	2,648	2,648	포항시		
22	포항시 대도동	328-75	전	155	155	포항시		
23	포항시 대도동	328-103	전	132	132	포항시		
24	포항시 대도동	328-111	전	453	43	국(건설교통부)		
25	포항시 대도동	328-112	전	53	16	국(건설교통부)		
26	포항시 대도동	328-113	전	688	212	포항시		
27	포항시 대도동	328-118	전	99	99	포항시		
28	포항시 대도동	328-119	전	99	99	포항시		
29	포항시 대도동	328-120	전	132	132	황갑수	대도동328-141	
30	포항시 대도동	328-121	전	99	99	포항시		
31	포항시 대도동	328-122	전	99	99	포항시		
32	포항시 대도동	328-123	전	99	99	포항시		
33	포항시 대도동	328-124	전	99	99	포항시		
34	포항시 대도동	328-125	전	132	132	포항시		
35	포항시 대도동	328-126	전	99	99	포항시		
36	포항시 대도동	328-127	전	76	73	포항시		
37	포항시 대도동	328-128	전	33	11	포항시		
38	포항시 대도동	328-129	전	50	50	박명암	대도동328	
39	포항시 대도동	328-130	전	50	50	포항시		
40	포항시 대도동	328-131	전	66	66	포항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69필지			67,134	29,388			
41	포항시 대도동	328-132	전	66	66	포항시		
42	포항시 대도동	328-133	전	66	66	포항시		
43	포항시 대도동	328-134	전	66	66	포항시		
44	포항시 대도동	328-135	전	66	65	포항시		
45	포항시 대도동	328-136	전	73	73	포항시		
46	포항시 대도동	328-137	전	83	83	포항시		
47	포항시 대도동	328-138	전	83	83	포항시		
48	포항시 대도동	328-139	전	83	83	포항시		
49	포항시 대도동	328-140	전	89	89	포항시		
50	포항시 대도동	328-141	전	99	99	포항시		
51	포항시 대도동	328-153	대	89	89	포항시		
52	포항시 대도동	328-154	대	86	86	포항시		
53	포항시 대도동	328-155	전	79	79	포항시		
54	포항시 대도동	328-164	구	390	351	국(농림수산부)		
55	포항시 대도동	329-1	전	2,383	298	포항시		
56	포항시 대도동	380-3	체	19,580	1,181	포항시		
57	포항시 대도동	400-1	전	327	326	포항시		
58	포항시 대도동	400-4	전	165	18	포항시		
59	포항시 대도동	400-5	전	387	1	포항시		
60	포항시 대도동	400-7	전	33	33	포항시		
61	포항시 대도동	401-1	전	304	74	포항시		
62	포항시 대도동	401-5	전	86	1	포항시		
63	포항시 대도동	404-1	전	2,086	601	포항시		
64	포항시 대도동	404-2	전	529	372	포항시		
65	포항시 대도동	405-2	구	129	129	포항시		
66	포항시 대도동	405-3	전	1,190	1,190	포항시		
67	포항시 대도동	406-4	구	76	76	포항시		
68	포항시 대도동	406-5	전	281	281	포항시		
69	포항시 대도동	409-5	전	145	59	포항시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2-1604호

**공 고**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항만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생항만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환동해 물류중심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항로연장지원금이 지원되어야 하나 현 조례는 지원기준 등이 비탄력적으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에서 ⇒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로 한다.

-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다만 지원규모, 기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에서 결정한다(안 제4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10월 31일 ~ 11월 19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12. 11.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해양항만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해양항만팀(항만행정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우편번호 790-722)

- 전화 054-270-2772~3, FAX 054-270-3689, 이메일 didi70@korea.kr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조례 제명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를 “포항영일만항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당해년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다만 지원규모, 기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항로개설 협약 체결하여 운항중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명</b>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p> <p><b>제2조(정의)</b> (생 략)                      1. ~ 4. (생 략)                      5. “1차 년도” 화물이란 최초지원대상 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화물을 말한다.                      6. ~ 7. (생 략)</p> <p><b>제3조(재정지원)</b> ① 시장은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타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② (생 략)                      1. ~ 3. (생 략)</p> <p><b>제4조(지원기준 등)</b> (생 략)                      1.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로연장지원금은 적재물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며 1티이유(TEU)당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고, 각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다 3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항로 개설일부터 3년 내로 한다)                       2.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b>제7조(지원금의 반환)</b> 시장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p>	<p><b>제명</b> :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p> <p><b>제2조(정의)</b>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해당연도-----                      -----                      6. ~ 7. (현행과 같음)</p> <p><b>제3조(재정지원)</b>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p> <p><b>제4조(지원기준등)</b> (현행과같음)                      1. -----                      -----                      ----- 다만 지원규모,기간은 예산의 범위안 에서 포항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에서 결정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p> <p><b>제7조(지원금의 반환)</b> -----                      -----그 밖의-----                      -----                      -----</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공고 제2012-58호

## 포항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포항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일

포항시장 박승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남구 효자동 34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포항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 명 칭 : 효자빛물펌프장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27,467㎡
  - 규 모 : 펌프장 1동, 유수지 1지(8,500㎡), 관거 신설 및 개량 L=1.96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포항시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100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실시계획 고시일
- 준 공 : 2015.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장 소 :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 054-270-54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고 제2012-1619호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1월 6일

포항시장 박승호

1. 공 고 기 간 : 2012. 11. 6 ~ 2012. 11. 25(2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제재활용사업체 - 붙임 내역서 참조
3. 폐차 예정일 : 2012. 11. 26부터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054)270-3643
5.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6. 강제처리대상차량 : 89다2318호 외 3대 (번호미상 이륜차 3대 포함)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5 ◆ 공고기간 : 2012-11-06에서 2012-11-25까지

관리 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지장소	보관장소	
2012-191	89다2318 노윤선	그랜드스탁스(GRAND STAREX) 630501-*****	대구 서구 북비산로61길 20-11 (비산동)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전촌항내 바닷속 (주)태경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동구 세우과 - 지방세체납</li> <li>● 대구 서구 세우과 - 지방세체납</li> <li>● " " 교통과 - 의무보험 3, 주정차위반 6</li> <li>● " " 환경관리과 - 환경개선부담금 5</li> <li>●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 체납처분(72600523, 미래구역)</li> <li>● 원대캐피탈(주) - 대구서부지원 2009카단6195 ('09.10.15.)</li> <li>● 롯데카드(주) - 대구서부지원 2010카단2700 ('10.6.1.)</li> <li>■ 지방 : 우리파이낸셜㈜ 수원 팔달구 ('09.7.16.)</li> </ul>
2012-179	미상(이런) 차대번호 SM50M265853 불상	호성 super cab -*****		포항시 남구 상공로92번길 25-10 (대도동) 대도초등학교내 (주)태경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2012-181	미상(이런) 차대번호 확인불가 불상	Delfino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7-1 거성정목역항 주차장 (주)태경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2012-190	미상(이런) 차대번호 KMY0GZ50GCV02 8298 불상	대림 Message -*****		포항시 남구 상도동 18-122 신 성채르빌 원룸 태평양중합폐차장		

포항시의회 공고 제24호

### 제1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포항시의회 의원 이준영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2년 11월 14일(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2년 11월 6일

포항시의회의장 이 철 구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요약

- 공 표 일 : 2012년 10월 29일
- 검 사 일 : 2012년 10월 중
- 검사기관 : 포항시상수도사업소 정수과
- 검사대상
  - 원 수 (하천수 및 호소수) : 10개소
  - 정 수 : 유강정수장 등 8개소
  - 노후지역 수도꼭지 : 8개소
- 검사항목
  - 원 수 : 환경기준(하천수, 호소수) 32개 항목
  - 정 수 : 먹는물수질기준 57개 항목
  - 노후지역 수도꼭지 : 먹는물수질기준 10개 항목
- 검사결과
  - 정 수, 노후지역 수도꼭지 :
    - 전항목에 대해 모두 먹는물수질기준 적합
  - 원 수 :

구 분 (상수원)	유 강	공 단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양 덕	약 성	비 고
	안계댐수		형산강 복류수	형산강 복류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영천댐수	곡강천 복류수	
등 급	III (보통)		I a (매우 좋음)	I a (매우 좋음)	I a (매우 좋음)	IV (약간 나쁨)	IV (약간 나쁨)	I a (매우 좋음)	

▷ 하천수 및 호소수 수질기준(BOD/COD기준)임

#### << 학야정수장 수질검사결과 >>

- 검 사 일 : 2012년 9월 중
- 검사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검사결과 :
  - 정수장 1개소 및 수도꼭지 2개소(천북2, 신광면) : 기준적합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10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0. 29.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9월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신명, 기계 앞부
			안계역수			형상강 불류수 안계역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불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38	불검출	불검출	0.39	0.39	불검출	불검출	0.17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sub>3</sub>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sub>3</sub> -N)	10mg/l이하	4.8	1.3	1.4	5.0	4.8	0.6	1.4	2.2	1.5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14. 보론(B)	1.0mg/l이하	0.04	0.01	0.01	0.05	0.04	0.01	0.02	0.04	0.04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진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73	0.48	0.76	0.43	0.60	0.21	0.42	0.32	0.98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36	0.048	0.037	0.047	0.043	0.048	0.053	0.026	0.062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21	0.037	0.030	0.022	0.021	0.026	0.026	0.016	0.054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1	0.011	0.007	0.017	0.015	0.014	0.019	0.007	0.008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4	불검출	불검출	0.008	0.007	0.008	0.008	0.003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안계댐수	북류수	진전지	농대지수	공강천 북류수	(수자원공사)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96	45	38	105	101	40	58	89	72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sub>4</sub> )	10mg/ℓ이하	2.3	3.6	2.4	2.2	1.6	1.8	2.4	1.8	5.4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2	7.1	6.8	7.3	7.3	6.8	7.2	6.7	7.1	
45.아연(Zn)	3mg/ℓ이하	0.025	0.008	0.006	0.008	0.008	0.003	0.008	0.155	0.004	
46.염소이온(Cl <sup>-</sup> )	250mg/ℓ이하	49	10	13	50	47	17	21	17	15	
47.총발산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04	74	76	240	217	95	128	175	142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1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23	0.19	0.11	0.10	0.17	0.09	0.09	0.20	0.06	
51.황산이온(SO <sub>4</sub> <sup>2-</sup> )	200mg/ℓ이하	96	14	12	104	100	11	29	54	24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	불검출	불검출	0.02	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	
판 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수장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병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45	0.56	0.97	0.46	0.35	0.14	0.44	0.30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27	0.008	0.006	0.017	0.016	0.002	0.006	0.157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25	10	13	25	24	18	21	17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1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